2020 정책이슈리포트

Policy
# iSSUE REPORT

서울특별시

#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연구진

**김성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여효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04

II 소방직 국가직화의 함의와 서울시의 운영현황

1. 소방직 국가직화의 함의 ..... 06
2.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법 검토 ..... 07
3. 소방직 공무원의 운영현황 ..... 09
4. 소방예산 및 지방비 운영 현황 ..... 11

III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쟁점 ..... 15

IV 소방공무원 충원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분석

1. 소방공무원 현장부족 인력 충원계획 ..... 18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21
3.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추정 ..... 21
4. 제도 개선 전후 시도별 교부액 비교 및 장기전망 ..... 27
5. 분석결과의 시사점 ..... 32

V 소방직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운영 개선방향 ..... 34

참고문헌 ..... 43

# I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20년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만임

-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부터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되었으나 광역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이나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의 제공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이에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을 계기로 2017년 7월에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소방청을 개청함과 동시에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과 처우개선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음

-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1년까지 45%로 늘리는 정부안을 확정하였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로서 10% 이내에서 특수수요를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소방·안전 투자수요, 안전관리 강화 노력도, 재정여건을 기준으로 교부되어 오고 있음

- 즉,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45% 중 20%는 이전과 같이 소방안전시설이나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이고 나머지 25%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충원재원으로 볼 수 있음
  - 2020년 기준 전국의 소방안전교부세는 7,143억 원으로서 이 중 시설확충재원이 3,683억 원, 인건비가 3,460억 원임

- 그러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소방직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서 소방직 인력의 확충이나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한 소방안전의 효과 제고에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대한 함의, 지자체의 소방직 인건비 부담 현황, 쟁점 분석을 통해 향후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소방공무원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 시사함

# II

# 소방직 국가직화의 함의와 서울시의 운영현황

## 1. 소방직 국가직화의 함의

- 국가공무원은 국가에 의해서 임명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수행하며, 보수는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공무원을 의미하지만 국가공무원이 항상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님
  - 즉 국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극히 한정된 분야의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임용 주체가 중앙정부냐 혹은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국가공무원에 대응하는 개념임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크게 구분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으로 나눠지고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이 있음

•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비교 •

| 구분 |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
| 소속 | 정부 | 지자체 |
| 근무지 | • 전국 순환보직<br>• 국가의 주요기관 근무 | • 각 지자체의 소속 내에서 보직 순환 업무 |

| 구분 |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
| 선발 | • 일반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음<br>(※ 일반행정과 우정사업본부 행정직만 예외적으로 전국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선발) | • 지자체 단위별로 선발 |
| 처우 | 급여 및 복지, 동일 | |

-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 인사혁신처 주관 시험으로 국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지방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됨

- 이전까지는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소방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사무의 수행능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국가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없이 균등한 수준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법 검토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이 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 계정과 소방정책 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

-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함
  -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는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수정되어야 함

- 소방정책 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등과 각종 수수료 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제6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 제4조(세입)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액,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에 의하면,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3. 소방직 공무원의 운영현황

- 2019년 말 기준으로 소방조직은 중앙인 소방청과 지방조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관련 통계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보고가 됨
  - 중앙의 소방청은 1관, 2국, 14과, 2소속기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방청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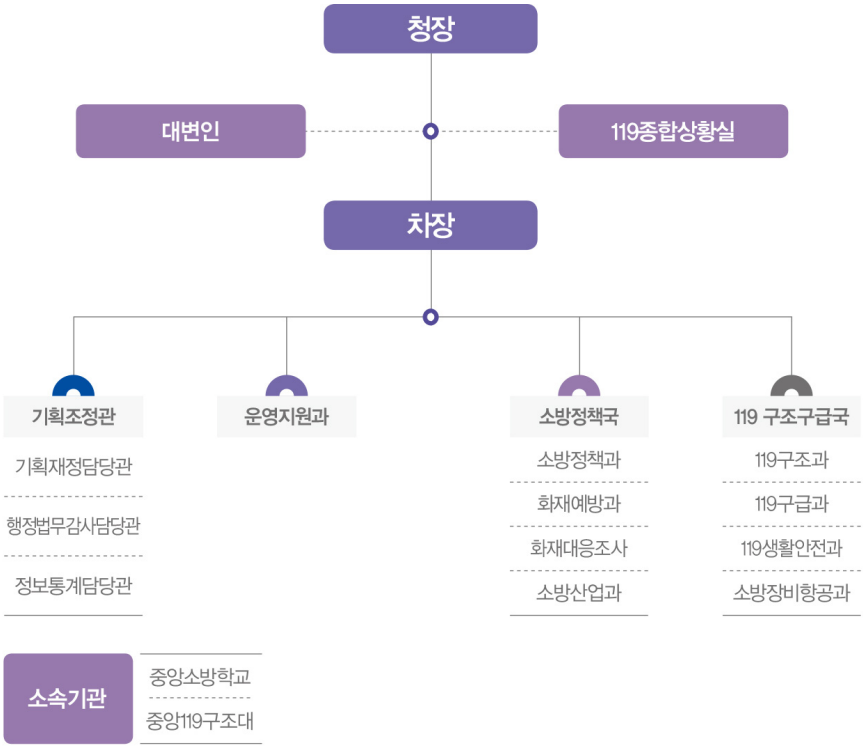


자료 : 2019 소방청 통계연보

- 지방은 17개 시도에 18개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본부 산하에 2소방서(219), 소방항공대(18), 지방소방학교(8)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소방서(24), 119안전센터(117), 119구조대(24), 119구급대(117), 소방항공대(1)의 편제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소방본부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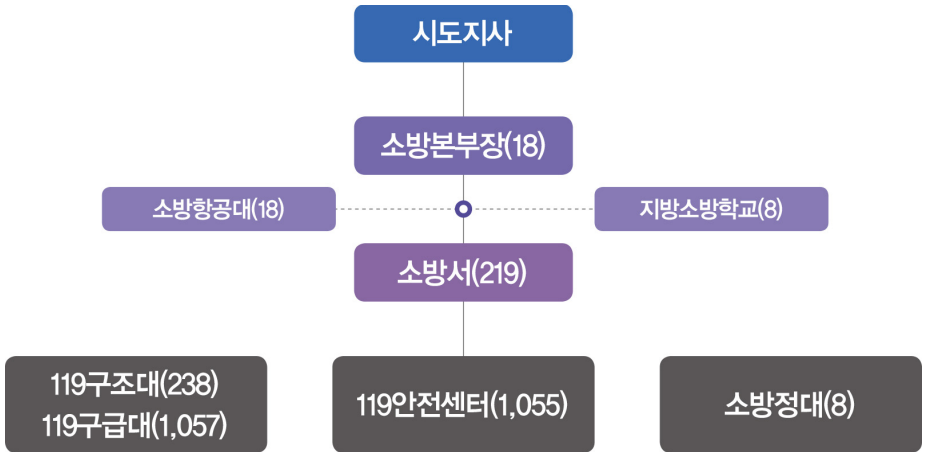


자료 : 2019 소방청 통계연보



- 2018년 말 기준으로 시도 소방관서의 인력은 총 51,149명이며 이 중 서울은 7,002명으로 집계됨
  - 시도별 소방공무원은 특광역시는 서울(7,002명), 부산(3,225명), 인천(2,848명) 순으로 많고, 도는 경기(8,941명), 경북(4,193명), 강원(3,225명) 순임

- 서울시의 소방직 공무원 대다수는 소방서 소속 출동대(5,356명)에 배속되어 있으며, 현장대응단(2,989명), 안전센터(4,852명), 구조대(50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 소방서에 행정, 예방, 재난 대응 인력이 각각 290명, 601명, 216명으로 구성됨
  -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인력은 총 533명이며, 본부(167명), 상황실(171명), 소방학교(51명), 특구단(129명), 항공대(30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도 소방관서 인력현황(2018) •

단위 : 명

| 구분 | 총계 | 소방본부 | | | | | 소방서 | | | | 소방서 소속 출동대 | | | | | 체험관 |
|---|---|---|---|---|---|---|---|---|---|---|---|---|---|---|---|---|
| | | 본부 | 상황실 | 소방학교 | 특구단 | 항공대 | 행정 | 예방 | 재난대응 |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 | | 구조대 | 소방정대 | |
| | | | | | | | | | | | 진압대 | 구급대 | 지역대 | | | |
| 계 | 51,149 | 1,262 | 1,231 | 323 | 618 | 305 | 2,274 | 3,309 | 1,598 | 2,989 | 20,636 | 10,039 | 2,379 | 3,935 | 133 | 118 |
| 서울 | 7,002 | 167* | 171 | 51 | 129 | 15 | 290 | 601 | 216 | 480 | 2,992 | 1,380 | | 504 | | 6 |
| 부산 | 3,225 | 110 | 103 | 36 | 48 | 19 | 114 | 219 | 110 | 165 | 1,340 | 594 | 27 | 263 | 41 | 36 |
| 대구 | 2,513 | 67 | 52 | | 28 | 22 | 104 | 159 | 64 | 128 | 1,145 | 470 | 54 | 202 | | 18 |
| 인천 | 2,848 | 76 | 62 | 33 | 26 | 21 | 113 | 196 | 98 | 210 | 1,166 | 518 | 68 | 242 | 19 | |
| 광주 | 1,386 | 49 | 45 | 35 | 36 | 15 | 58 | 102 | 58 | 48 | 596 | 264 | | 80 | | |
| 대전 | 1,450 | 58 | 45 | | 41 | 7 | 55 | 75 | 45 | 80 | 655 | 279 | | 110 | | |
| 울산 | 1,053 | 35 | 33 | | 16 | 16 | 51 | 61 | 27 | 45 | 437 | 207 | 24 | 86 | | 15 |
| 세종 | 396 | 30 | 22 | | | | 16 | 15 | 8 | 18 | 152 | 76 | 33 | 26 | | |
| 경기 | 8,941 | 179 | 232 | 66 | 67 | 24 | 383 | 665 | 196 | 652 | 3,750 | 1,629 | 370 | 728 | | |
| 강원 | 3,225 | 66 | 69 | 40 | 81 | 45 | 164 | 133 | 113 | 259 | 1,117 | 621 | 300 | 217 | | |
| 충북 | 2,070 | 44 | 52 | 0 | 51 | 16 | 132 | 95 | 36 | 108 | 780 | 384 | 156 | 216 | | |
| 충남 | 3,006 | 61 | 62 | 23 | 25 | 16 | 136 | 171 | 114 | 140 | 1,261 | 660 | 120 | 192 | 10 | 15 |
| 전북 | 2,120 | 44 | 44 | | | 16 | 96 | 100 | 77 | 133 | 764 | 389 | 259 | 155 | 15 | 28 |
| 전남 | 3,012 | 62 | 56 | | 15 | 17 | 145 | 173 | 115 | 117 | 1,049 | 516 | 438 | 284 | 25 | |
| 경북 | 4,193 | 77 | 67 | 39 | 31 | 23 | 196 | 270 | 171 | 190 | 1,713 | 876 | 276 | 264 | | |
| 경남 | 3,081 | 65 | 72 | | 24 | 16 | 153 | 198 | 116 | 162 | 1,055 | 726 | 224 | 257 | 13 | |
| 제주 | 819 | 40 | 19 | | | 17 | 38 | 33 | 22 | 25 | 315 | 234 | 30 | 46 | | |
| 창원 | 809 | 32 | 25 | | | | 30 | 43 | 12 | 29 | 349 | 216 | | 63 | 10 | |

자료 : 2019 소방청 통계연보

## 4. 소방예산 및 지방비 운영 현황

- 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소방인력의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을 추진해 왔음
-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최근 소방예산은 인건비 비중에서 왜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을 전출규모의 기준으로 설정함

## 소방 전출금 규모 산출

- 시도별 지방비 소방예산의 비율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평균을 살펴보면 지역의 특성상 강원도가 3.62%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남, 경북, 충북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은 2019년 기준으로 순계예산의 1.8%인 5,502억 원을 소방계정에 전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소방예산의 순계 예산 규모 비중 •

단위 : 백분율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5년 평균 |
|---|---|---|---|---|---|---|
| 서울 | 1.80% | 1.80% | 1.70% | 1.90% | 1.80% | 1.80% |
| 부산 | 1.50% | 1.70% | 1.30% | 1.70% | 1.70% | 1.58% |
| 대구 | 1.90% | 1.90% | 2.00% | 2.00% | 2.40% | 2.04% |
| 인천 | 1.60% | 1.30% | 1.50% | 1.60% | 1.80% | 1.56% |
| 광주 | 1.80% | 1.70% | 1.40% | 1.80% | 2.30% | 1.80% |
| 대전 | 1.80% | 1.70% | 1.90% | 1.70% | 2.40% | 1.90% |
| 울산 | 1.80% | 1.60% | 1.60% | 1.90% | 2.10% | 1.80% |
| 세종 | 2.30% | 2.20% | 1.40% | 1.40% | 1.90% | 1.84% |
| 경기 | 1.80% | 1.80% | 1.70% | 1.70% | 2.70% | 1.94% |
| 강원 | 3.80% | 3.50% | 3.30% | 3.40% | 4.10% | 3.62% |
| 충북 | 2.40% | 2.30% | 2.30% | 2.70% | 2.80% | 2.50% |
| 충남 | 2.60% | 2.60% | 2.60% | 2.50% | 2.90% | 2.64% |
| 전북 | 2.60% | 2.50% | 2.00% | 2.40% | 2.60% | 2.42% |
| 전남 | 2.70% | 2.30% | 2.40% | 2.30% | 2.50% | 2.44% |
| 경북 | 2.90% | 2.90% | 2.70% | 2.50% | 3.00% | 2.80% |
| 경남 | 3.40% | 2.90% | 2.40% | 2.50% | 3.10% | 2.86% |
| 제주 | 1.40% | 1.30% | 1.50% | 1.40% | 1.30% | 1.38% |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전출 규모 •

단위 : 백만 원, 백분율, 2019년 기준

| 구분 | 2019 | 비중 | 전출액 |
|---|---|---|---|
| 서울 | 30,543,358 | 1.80% | 550,186 |
| 부산 | 10,878,653 | 1.60% | 169,434 |
| 대구 | 7,747,478 | 2.10% | 159,065 |
| 인천 | 9,406,196 | 1.50% | 145,153 |
| 광주 | 4,853,092 | 1.80% | 87,646 |
| 대전 | 4,528,047 | 1.90% | 86,957 |
| 울산 | 3,448,214 | 1.80% | 62,288 |
| 세종 | 1,468,578 | 1.80% | 26,998 |
| 경기 | 22,794,114 | 1.90% | 443,645 |
| 강원 | 5,147,967 | 3.60% | 185,263 |
| 충북 | 4,318,874 | 2.50% | 108,645 |
| 충남 | 6,049,319 | 2.60% | 159,240 |
| 전북 | 6,042,819 | 2.40% | 145,462 |
| 전남 | 6,973,810 | 2.40% | 169,854 |
| 경북 | 8,170,290 | 2.80% | 228,983 |
| 경남 | 8,099,782 | 2.90% | 231,730 |
| 제주 | 5,116,992 | 1.40% | 70,731 |
| 전출액 합계 | | | 3,031,279 |

-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 사업비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소방특별회계 중 인건비 계정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인건비 계정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세종시가 8년간 58.4%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낮고 대전이 73.9%로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 73.5%로서 인건비 비중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전출 중 인건비 비중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평균 |
|---|---|---|---|---|---|---|---|---|---|
| 서울 | 75.0% | 77.0% | 76.0% | 73.0% | 71.0% | 72.0% | 71.0% | 73.0% | 73.5% |
| 부산 | 73.0% | 77.0% | 75.0% | 67.0% | 69.0% | 72.0% | 71.0% | 73.0% | 72.1% |
| 대구 | 79.0% | 76.0% | 76.0% | 71.0% | 70.0% | 73.0% | 76.0% | 76.0% | 74.6% |
| 인천 | 73.0% | 79.0% | 81.0% | 78.0% | 76.0% | 70.0% | 72.0% | 74.0% | 75.4% |
| 광주 | 77.0% | 71.0% | 78.0% | 74.0% | 67.0% | 72.0% | 74.0% | 68.0% | 72.6% |
| 대전 | 73.0% | 76.0% | 79.0% | 70.0% | 73.0% | 76.0% | 70.0% | 74.0% | 73.9% |
| 울산 | 60.0% | 64.0% | 67.0% | 62.0% | 65.0% | 57.0% | 57.0% | 69.0% | 62.6% |
| 세종 | 60.0% | 53.0% | 66.0% | 49.0% | 61.0% | 53.0% | 60.0% | 65.0% | 58.4% |
| 경기 | 68.0% | 72.0% | 75.0% | 74.0% | 72.0% | 67.0% | 71.0% | 71.0% | 71.3% |
| 강원 | 73.0% | 74.0% | 72.0% | 65.0% | 66.0% | 61.0% | 68.0% | 68.0% | 68.4% |
| 충북 | 68.0% | 72.0% | 71.0% | 65.0% | 65.0% | 67.0% | 68.0% | 70.0% | 68.3% |
| 충남 | 62.0% | 61.0% | 67.0% | 63.0% | 62.0% | 60.0% | 62.0% | 67.0% | 63.0% |
| 전북 | 71.0% | 78.0% | 78.0% | 72.0% | 71.0% | 70.0% | 72.0% | 74.0% | 73.3% |
| 전남 | 76.0% | 65.0% | 75.0% | 68.0% | 68.0% | 66.0% | 69.0% | 69.0% | 69.5% |
| 경북 | 70.0% | 68.0% | 70.0% | 68.0% | 70.0% | 69.0% | 68.0% | 72.0% | 69.4% |
| 경남 | 61.0% | 67.0% | 67.0% | 69.0% | 69.0% | 68.0% | 66.0% | 67.0% | 66.8% |
| 제주 | 76.0% | 74.0% | 72.0% | 60.0% | 55.0% | 51.0% | 58.0% | 57.0% | 62.9% |

# III

#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쟁점

## 국가직화의 함의 이견

- 소방직의 국가직화란 소방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중앙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소방직에 대한 지방의 책임과 권한은 없어지게 됨
- 따라서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부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과거 인건비 부담 재원의 중앙 전출이 맞는 표현임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은 아직 지방사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제외한 소방 관련 사무는 여전히 지방의 책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

## 2022년까지 2만 명 소방공무원 충원

- 필요한 인건비 3,459억 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됨
- 2021년 이후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자치단체별 소방 인력 현황

- 소방공무원의 98.7%는 각 시·도 소방본부 소속인데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인 상황임

- 서울은 부족한 인력이 필요 인력의 6% 정도에 그치지만 강원도는 46%, 충남·충북은 거의 5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진화작업용 장갑을 소방관이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곳도 있음

## 소방공무원 요구사항

- 소방관들은 인력 충원과 함께 노후장비 교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힘든 부분이었으며 이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있어온 상황임

## 소방의 재원 분담은 자치경찰과 같은 논리



- 소방사무는 지방사무로 유지, 인건비 역시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신분만 국가직에 그친 사실상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지적이 있음
  - 경찰 등 다른 국가직처럼 인사, 지휘, 재정까지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어 간부 임명 및 인사권 등은 모두 국가로 이관되는데 반해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2020년 인건비를 최종 산정한 결과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보다 381억 원이 늘어난 5,544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 이 중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3,999명, 3,222억 원으로 58%를 차지함
  -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강원도는 기존 인건비를 그대로 부담하는 상황임
  - 국가직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에 추가로 지급되는 300억 원이 전부이기에 정부의 부담률을 높여가야 할 것임

## 중앙의 소방직 재원부담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방재정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방안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 지방소방예산 중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 조달 비중은 1982년 67.1%에 달했으나 2010년 24.6%까지 낮아지면서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일반전출금 비중이 평균 68.7%에 이를 만큼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재원 국가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거나 지방세법상 소방재원 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분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일반전출금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 소방안전교부세 매년 감소

- 최근 흡연율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2016년 첫 도입 당시 강원도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는 272억 원으로 2017년 365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214억 원, 2020년 210억 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소방장비 구입비가 부족해져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장비 문제 등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직 전환 이후에 정부가 더욱 투자에 나서야 함

# IV
# 소방공무원 충원 인건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분석

## 1. 소방공무원 현장부족 인력 충원계획

- 현장출동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소방청은 2017년부터 5년간 2만 명 충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19,871명 충원이 계획되어 있음
  - 2017년 하반기~2019년 사이에 총 8,659명을 충원하였음
  - 2020년 3,667명, 2021년 3,642명, 2022년 3,903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음
- 서울은 이 기간 동안 총 721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각각 118명, 164명, 356명의 신규 현장인력을 충원할 계획임

• 시도별 소방직공무원 현장부족인력 충원현황 및 계획 •

기간 : 2017년 하반기~2022년

| 구분 | 계 | 충원실적 | | | 충원계획 | | |
|---|---|---|---|---|---|---|---|
| | | 2017년 하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계 | 3,036 | 217 | 605 | 547 | 530 | 498 | 639 |
| 서울 | 721 | 30 | 28 | 25 | 118 | 164 | 356 |
| 부산 | 652 | 68 | 121 | 164 | 124 | 87 | 88 |
| 대구 | 492 | 39 | 142 | 101 | 82 | 73 | 55 |
| 인천 | 662 | 29 | 144 | 146 | 135 | 114 | 94 |
| 광주 | 259 | 35 | 62 | 50 | 47 | 41 | 24 |
| 대전 | 250 | 16 | 108 | 61 | 24 | 19 | 22 |

| 구분 | 계 | 충원실적 | | | 충원계획 | | |
|---|---|---|---|---|---|---|---|
| | | 2017년 하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울산 | 512 | 26 | 61 | 99 | 102 | 108 | 116 |
| 세종 | 237 | 23 | 47 | 50 | 50 | 35 | 32 |
| 경기 | 2,992 | 399 | 522 | 524 | 507 | 514 | 526 |
| 강원 | 1,739 | 147 | 286 | 316 | 318 | 337 | 335 |
| 충북 | 1,203 | 90 | 213 | 208 | 214 | 210 | 268 |
| 충남 | 1,898 | 94 | 293 | 342 | 379 | 377 | 413 |
| 전북 | 1,257 | 46 | 251 | 255 | 204 | 203 | 298 |
| 전남 | 2,192 | 109 | 314 | 442 | 444 | 441 | 442 |
| 경북 | 2,253 | 95 | 478 | 428 | 434 | 424 | 394 |
| 경남 | 1,666 | 145 | 226 | 321 | 320 | 330 | 324 |
| 제주 | 492 | 66 | 9 | 170 | 87 | 84 | 76 |
| 창원 | 394 | 43 | 74 | 78 | 78 | 81 | 40 |

자료 : 소방청(2020. 1. 10) 보도자료



- 현장출동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5년간 2만 명 채용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신규 채용되는 인력은 2018년 말 현원 기준 38.8%에 달하는 인력이며, 신규채용 인력 대부분이 소속 출동대에 배속된다고 가정하면 소속 출동대 현원(40,111) 대비 49.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소방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음 표에서는 소속 출동대 현원(B) 대비 신규채용인력(C)의 비율을 비교하고 있으며, 현원대비 신규채용인력 비율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나타냄을 알 수 있음
  - 출동대 현원 대비 신규채용인력 비율(B/C)이 큰 시도는 전남(90.2%), 충남(79.6%), 세종(77.7%), 제주(75.7%), 전북(73.3%) 순 임
  - 비율이 낮은 시도는 서울(13.5%), 대전(22.2%), 대구(24.6%) 순이며, 울산(64.1%)과 세종(77.7%)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의 현원대비 신규채용인력 비율이 낮음
  - 즉, 특광역시 비율 평균이 35.6%인데 반해 도 평균은 69.9%로서 2배 가까운 현원 대비 신규 충원율을 나타냄

- 서울의 경우 출동대 신규 충원율이 1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전국 평균과 특광역시 평균의 1/3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는 서울의 경우 현장의 소방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소방청의 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크게 확충시키지 않아도 됨을 나타냄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에는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액 기준을 충원 누적인원으로 계산하도록 산식을 나타내고 있음
  -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의 충원 누적 소방공무원 수로 교부액 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현원대비 신규 충원율이 낮은 자치단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산식임

• 현원대비 신규채용인력 비율 •

단위 : 명, 백분율, 2018년 말 현원기준

| 시도 | 시도 전체 (A) | 소속 출동대 (B) | 신규 채용인력 (C) | A/C (%) | B/C (%) |
|---|---|---|---|---|---|
| 계 | 51,149 | 40,111 | 19,871 | 38.8% | 49.5% |
| 서울 | 7,002 | 5,356 | 721 | 10.3% | 13.5% |
| 부산 | 3,225 | 2,430 | 652 | 20.2% | 26.8% |
| 대구 | 2,513 | 1,999 | 492 | 19.6% | 24.6% |
| 인천 | 2,848 | 2,223 | 662 | 23.2% | 29.8% |
| 광주 | 1,386 | 988 | 259 | 18.7% | 26.2% |
| 대전 | 1,450 | 1,124 | 250 | 17.2% | 22.2% |
| 울산 | 1,053 | 799 | 512 | 48.6% | 64.1% |
| 세종 | 396 | 305 | 237 | 59.8% | 77.7% |
| 경기 | 8,941 | 7,129 | 2,992 | 33.5% | 42.0% |
| 강원 | 3,225 | 2,514 | 1,739 | 53.9% | 69.2% |
| 충북 | 2,070 | 1,644 | 1,203 | 58.1% | 73.2% |
| 충남 | 3,006 | 2,383 | 1,898 | 63.1% | 79.6% |
| 전북 | 2,120 | 1,715 | 1,257 | 59.3% | 73.3% |
| 전남 | 3,012 | 2,429 | 2,192 | 72.8% | 90.2% |
| 경북 | 4,193 | 3,319 | 2,253 | 53.7% | 67.9% |
| 경남 | 3,081 | 2,437 | 1,666 | 54.1% | 68.4% |
| 제주 | 819 | 650 | 492 | 60.1% | 75.7% |
| 창원 | 809 | 667 | 394 | 48.7% | 59.1% |

##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1)]

-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충하도록 함
- 기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던 담배개별소비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재원의 순증분(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음(9조 4항)
- 이번 개정 지방교부세법의 시행일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올 연말까지 21년 이후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용되는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예정하고 있음
- 개정된 교부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에 대한 시도별 배분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 \times \frac{\text{해당 시도의 충원누적 소방공무원 수}^{2)}}{\Sigma\text{시도별 충원누적 소방공무원수}} \times 100\%$$

## 3.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추정

### 개정 지방교부세 산식 적용

- 다음 표는 개정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추가 교부되는 인건비분을 시도 배분 산식에 따라 배분하였을 때, 각 소방본부가 충원이 가능한 인력의 수를 나타냄

1) [참고자료 1] 소방직의 국가직화 관련 주요 법률내용

2) **충원누적** 소방공무원 수는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전년도 9월 30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 기준으로 산정함. 다만, 2020년도 시도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액 산정을 위한 **충원누적** 소방공무원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반영된 소방인력을 기준으로 함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전년도 9월 30일까지 반영된 소방인력 기준으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배분하게 되어 있음
-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액의 모수가 되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총액은 3,460억 원이며, 이 중 1%가 서울시 교부액으로서 2020년도 서울시 교부액은 33.17억 원임
- 시도별로는 경기(16.7%), 경북(11.6%), 전남(10%), 강원(8.6%), 충남(8.4%), 경남(8.0%)가 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서울(1.0%)은 광주(1.7%), 세종(1.4%)와 함께 비중이 낮은 단체에 속함

• 2020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교부액 및 충원 가능 인원 •

단위 : 명, %, 백만 원

| 구분 | 충원누적 실적 (~19년) | 배분비율(A) (시도별충원인력/ 전체충원인력) | 시도별 교부액 (담배소비세 인상액×A) | 채용가능[3] 인원(B) (교부액기준, 명) | 충원계획(C) (2020년) | 충원가능인원 (B-C) |
|---|---|---|---|---|---|---|
| 계 | 8,659 | 100.0% | 346,000[4] | 4,124.0 | 3,667 | 457 |
| 서울 | 83 | 1.0% | 3,317 | 39.5 | 118 | -79 |
| 부산 | 353 | 4.1% | 14,105 | 168.1 | 124 | 43 |
| 대구 | 282 | 3.3% | 11,268 | 134.3 | 82 | 52 |
| 인천 | 319 | 3.7% | 12,747 | 151.9 | 135 | 16 |
| 광주 | 147 | 1.7% | 5,874 | 70.0 | 47 | 22 |
| 대전 | 185 | 2.1% | 7,392 | 88.1 | 24 | 64 |
| 울산 | 186 | 2.1% | 7,432 | 88.6 | 102 | -14 |
| 세종 | 120 | 1.4% | 4,795 | 57.2 | 50 | 7 |
| 경기 | 1,445 | 16.7% | 57,740 | 688.2 | 507 | 180 |
| 강원 | 749 | 8.6% | 29,929 | 356.7 | 318 | 38 |
| 충북 | 511 | 5.9% | 20,419 | 243.4 | 214 | 29 |
| 충남 | 729 | 8.4% | 29,130 | 347.2 | 379 | -33 |

3) 소방공무원 연평균 인건비 83,985천 원 적용 시, 예상교부액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을 나타냄
4) 2020년 소방안전 교부액 총액은 4~12월 담배 판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분 25%인 3,460억 원으로 산출함

| 구분 | 충원누적 실적 (~19년) | 배분비율(A) (시도별충원인력/ 전체충원인력) | 시도별 교부액 (담배소비세 인상액×A) | 채용가능 인원(B) (교부액기준, 명) | 충원계획(C) (2020년) | 충원가능인원 (B-C) |
|---|---|---|---|---|---|---|
| 전북 | 552 | 6.4% | 22,057 | 262.9 | 204 | 58 |
| 전남 | 865 | 10.0% | 34,564 | 412.0 | 444 | -33 |
| 경북 | 1,001 | 11.6% | 39,998 | 476.7 | 434 | 42 |
| 경남 | 692 | 8.0% | 27,651 | 329.6 | 320 | 9 |
| 제주 | 245 | 2.8% | 9,790 | 116.7 | 87 | 29 |
| 창원 | 195 | 2.3% | 7,792 | 92.9 | 78 | 14 |

- 소방직 공무원의 평균 인건비는 83,985천 원으로, 평균 인건비를 적용 시 시도별로 충당이 가능한 채용인력 규모를 위의 표 마지막 두 열에 제시하였음
  - 단, 소방직 공무원 평균인건비 83,985천 원은 소방공무원 전체 직급,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신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직급은 차관급인 소방총감부터 소방사(9급 상당)까지 11개 직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처음 소방관 임용 시 소방사보(9급 상당)을 부여받고, 소방간부 후보생 졸업 후 임관 시 소방위(6급 상당, 을)의 직급을 부여받음
  - 소방사 3호봉의 본봉 1,711천 원, 소방위 3호봉의 본봉 2,180 천 원이며,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연간 인건비로 환산하면 각각 38,532천 원, 44,160천 원으로 계산됨
  - 소방사, 소방위 초임 인건비는 평균 인건비 83,985천 원의 각각 46%, 53%에 해당하며, 소방사와 소방위 초임을 산술 평균하면 41,346천 원임

- 평균 인건비 적용 시 채용 가능한 신규 인력규모는 4,124명으로 올해 전국 신규채용 규모인 3,667명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음
  - 즉, 전국적으로 채용가능인원(B)은 올해 충원 계획인원(C)인 3,667명을 충당하고도 산술적으로는 457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 교부액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인 경기(180), 대전(64), 전북(58), 대구(52)의 경우 교부액이 신규 채용인원을 큰 폭으로 넘어섬

- 반면 서울(-79), 전남(-33), 충남(-33), 울산(-14)의 경우 올해 소방안전 교부액이 채용 인력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초임을 기준으로 할 때도 서울시의 채용가능인원은 80.22명으로 올해 충원 계획 118명에 비해 여전히 재원이 부족함
  - 평균 초임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다시 산출하면, 서울은 여전히 118명 채용대비 38명분의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이 부족한 반면, 다른 시도는 모두 신규인력 충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즉, 평균 인건비 적용 시 서울이외에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던 전남, 충남, 울산의 경우에도 신규 인력충원에 충분한 소방안전교부금이 배부되는 것으로 전환됨



• 연도별 소방안전 교부액(20년~23년) •

단위 : 백만 원, 백분율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합계 |
|---|---|---|---|---|---|
| 계 | 346,000 | 461,333 | 461,333 | 461,333 | 1,729,999 |
| 서울 | 3,317 | 7,523 | 10,545 | 16,739 | 38,124 |
| 부산 | 14,105 | 17,853 | 16,295 | 15,137 | 63,390 |
| 대구 | 11,268 | 13,624 | 12,625 | 11,422 | 48,939 |
| 인천 | 12,747 | 16,992 | 16,410 | 15,369 | 61,518 |
| 광주 | 5,874 | 7,261 | 6,789 | 6,013 | 25,937 |
| 대전 | 7,392 | 7,822 | 6,587 | 5,804 | 27,605 |
| 울산 | 7,432 | 10,779 | 11,441 | 11,887 | 41,539 |
| 세종 | 4,795 | 6,363 | 5,923 | 5,502 | 22,583 |
| 경기 | 57,740 | 73,059 | 71,245 | 69,463 | 271,507 |
| 강원 | 29,929 | 39,935 | 40,563 | 40,373 | 150,800 |
| 충북 | 20,419 | 27,135 | 27,013 | 27,929 | 102,496 |
| 충남 | 29,130 | 41,470 | 42,903 | 44,065 | 157,568 |
| 전북 | 22,057 | 28,295 | 27,707 | 29,183 | 107,242 |
| 전남 | 34,564 | 48,993 | 50,559 | 50,890 | 185,006 |
| 경북 | 39,998 | 53,709 | 53,709 | 52,307 | 199,723 |
| 경남 | 27,651 | 37,877 | 38,772 | 38,679 | 142,979 |
| 제주 | 9,790 | 12,426 | 12,019 | 11,422 | 45,657 |
| 창원 | 7,792 | 10,218 | 10,227 | 9,147 | 37,384 |

- 위의 표에서는 신규 채용계획이 수립된 2022년까지의 시도별 소방안전 교부액을 산출한 표를 나타냄[5)]
  - 각 연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충원 누적실적을 2017년부터 전년도 9월 말까지의 충원누적 인원으로 산출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서울시의 전체 대비 교부액 비중은 2020년 1.0%에서 2023년까지 각각 1.6%, 2.3%, 3.6%로 증가하게 됨

- 4년간 전체 소방안전교부액은 1조 7,299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울시 교부액은 381억 원으로 2.2%의 비중임
  - 서울시의 소방안전 교부액은 2020년 33.17억 원, 2021년 75.23억 원, 2022년 105.45억 원, 2023년 167.39억 원으로 증가함
  - 경기 2,715억 원, 경북 1,997억 원, 전남 1,850억 원 순으로 교부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세종 225억 원, 광주 259억 원, 서울 381억 원 순으로 교부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인건비 과부족분

- 다음 표에서는 22년까지 누적 인건비 과부족을 인원으로 제시함
  - 즉 아래 표의 특정 시도값이 양의 값을 갖는다면, 소방교부세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당연도의 신규 충원을 충원하고도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반대로 음의 값을 갖는다면 인건비 인상분만으로 계획된 충원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 서울의 경우 누적 인건비 부족분은 385명으로 가장 컸으며, 다른 시도는 3년 누적 합계가 양의 값을 나타냄
  - 한편 울산, 전남, 충남의 경우 21년부터는 인건비 부족분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누적 과부족 인원은 양의 값을 보임

5) 각 연도별('21~'23) 소방안전교부액 산출내역은 [참고자료 2]에 나타냄

- 또한 서울의 경우 21년, 22년 신규 채용인력이 늘어남에도 충원누적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교부액 대비 인건비 부족분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냄(-79 → -75 → -231)

• 시도별 누적 인건비 과부족(20년~22년) •

단위 : 명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6] |
|---|---|---|---|---|
| 계 | 457 | 1,842 | 1,582 | 3,881 |
| 서울 | -79 | -75 | -231 | -385 |
| 부산 | 43 | 125 | 106 | 274 |
| 대구 | 52 | 89 | 95 | 236 |
| 인천 | 16 | 88 | 101 | 205 |
| 광주 | 22 | 45 | 56 | 123 |
| 대전 | 64 | 74 | 56 | 194 |
| 울산 | -14 | 20 | 20 | 26 |
| 세종 | 7 | 40 | 38 | 85 |
| 경기 | 180 | 355 | 322 | 857 |
| 강원 | 38 | 138 | 148 | 324 |
| 충북 | 29 | 113 | 53 | 195 |
| 충남 | -33 | 116 | 97 | 180 |
| 전북 | 58 | 133 | 31 | 222 |
| 전남 | -33 | 142 | 160 | 269 |
| 경북 | 42 | 215 | 245 | 502 |
| 경남 | 9 | 121 | 137 | 267 |
| 제주 | 29 | 63 | 67 | 159 |
| 창원 | 14 | 40 | 81 | 135 |

6) 소방공무원 연평균 인건비 83,985천 원 적용 시, 예상교부액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을 나타냄

• 시도별 누적 인건비 과부족(20년~2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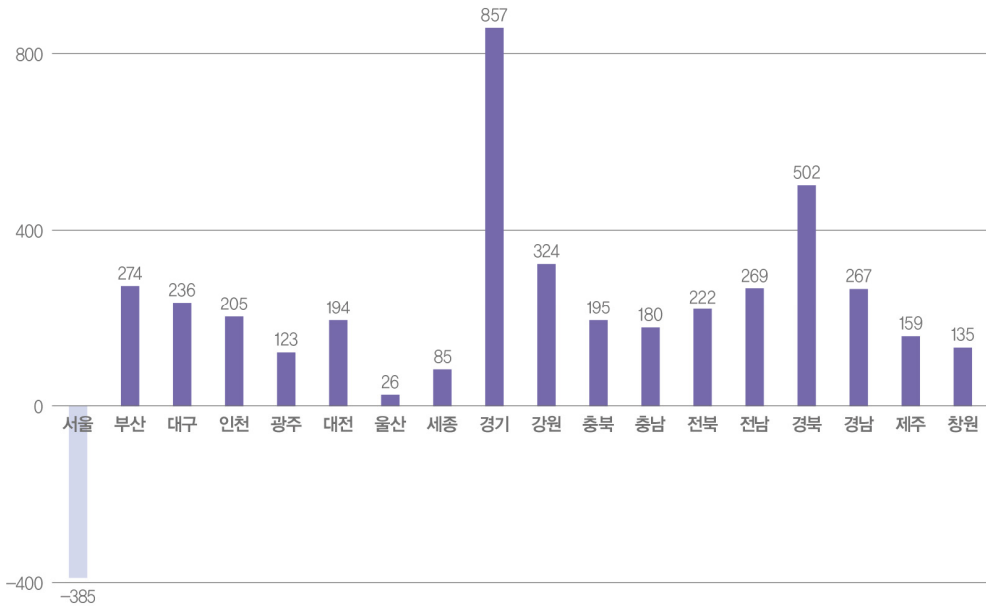




## 4. 제도 개선 전후 시도별 교부액 비교 및 장기전망

### 소방안전교부세 개정 후 시도별 지방교부세 예측

- 앞의 표 [연도별 소방안전 교부액(20년~23년)]에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증액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시도별 배분액을 예측하였음
  - 이에 따라 증액된 소방교부세분의 서울시 교부액은 4년간 381억 원, 4년 평균 교부액 비중은 2.2%로 나타남

- 한편 다음의 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교부액과 5년 평균 비중을 산출하였음
  - 이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액은 1조 9,886억 원이며, 이 중 서울시 교부액은 1,458억 원이었음

• 서울시의 과거 5년 평균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7.3%로서 제도변화에 따른 격차는 -5.1%에 달함

•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교부액('15~'19년) •

단위 : 백만 원, 백분율

| 시·도 | '15년도 | '16년도 | '17년도 | '18년도 | '19년도[7] | 5년 평균 비중 (%) |
|---|---|---|---|---|---|---|
| 계 | 314,080 | 414,700 | 458,815 | 417,260 | 383,834 | 100% |
| 서울 | 21,286 | 29,249 | 29,277 | 38,957 | 27,055 | 7.3% |
| 부산 | 19,477 | 24,382 | 24,934 | 34,425 | 22,098 | 6.3% |
| 대구 | 20,471 | 24,046 | 27,823 | 21,732 | 28,100 | 6.2% |
| 인천 | 19,692 | 23,026 | 20,647 | 21,178 | 24,575 | 5.6% |
| 광주 | 18,423 | 23,492 | 24,868 | 19,690 | 22,259 | 5.5% |
| 대전 | 16,674 | 19,784 | 23,835 | 15,349 | 17,439 | 4.7% |
| 울산 | 14,777 | 20,393 | 22,568 | 27,371 | 16,507 | 5.1% |
| 세종 | 5,137 | 6,848 | 8,259 | 6,368 | 5,342 | 1.6% |
| 경기 | 26,517 | 34,852 | 43,789 | 42,564 | 46,061 | 9.7% |
| 강원 | 20,358 | 27,238 | 36,543 | 25,820 | 21,460 | 6.6% |
| 충북 | 17,271 | 23,687 | 25,332 | 20,100 | 20,598 | 5.4% |
| 충남 | 18,391 | 26,960 | 26,337 | 21,529 | 20,065 | 5.7% |
| 전북 | 18,303 | 26,129 | 25,220 | 21,157 | 18,837 | 5.5% |
| 전남 | 19,119 | 27,106 | 29,858 | 25,184 | 27,376 | 6.5% |
| 경북 | 22,524 | 29,676 | 28,201 | 24,451 | 22,939 | 6.5% |
| 경남 | 15,878 | 21,028 | 23,987 | 25,469 | 21,057 | 5.4% |
| 제주 | 15,860 | 21,261 | 31,976 | 21,981 | 18,134 | 5.4% |
| 창원 | 3,924 | 5,544 | 5,361 | 3,934 | 3,931 | 1.1% |

자료 : 소방청 보도자료



7) 소방 인건비 1,536.7억 원 미반영

•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비중('15~'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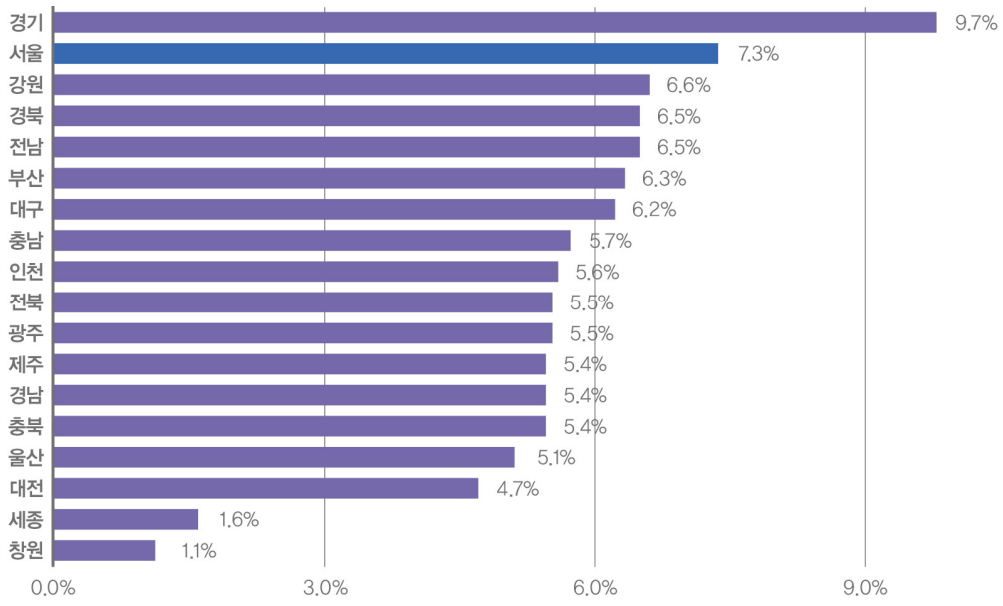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시도별 소방교부세 배부액 격차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에서는 과거 5년 평균 시도별 교부액 비중(흰색 막대, A)과 향후 4년 평균 교부액 비중(파란색 막대, B)을 비교하고, 시도별로 두 비중의 격차를 실선(보라색, 오른쪽 보조축)으로 표시하였음
  - 제도 개선 이전과 이후의 교부액 비중 격차를 비교하여, 차이(A-B)가 음으로 산출된 시도는 과거 평균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액을 배부됨을 의미함

- 현재의 소방교부세 교부액 비중보다 2023년까지 높은 비율로 배분되는 시도는 경기(+6.0%), 경북(+5.0%), 전남(+4.2%), 충남(+3.4%), 경남(+2.9%), 강원(+2.1%), 창원(+1.1%)이며, 전북(+0.7%), 충북(0.5%), 세종(-0.3%)는 현재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울(-5.1%), 광주(-4.0%), 대구(-3.1%), 대전(-2.8%), 제주(-2.7%), 울산(-2.6%), 부산(-2.0%)는 현재보다 적은 비중으로 배분되어 제도 개선으로 불리한 자치단체에 포함됨

- 특히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장직 소방공무원 충원 예정인 인력이 주로 도 자치단체에 집중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은 주로 도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 등 특광역시는 현행 배분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

• 소방안전교부액 시도별 평균 비중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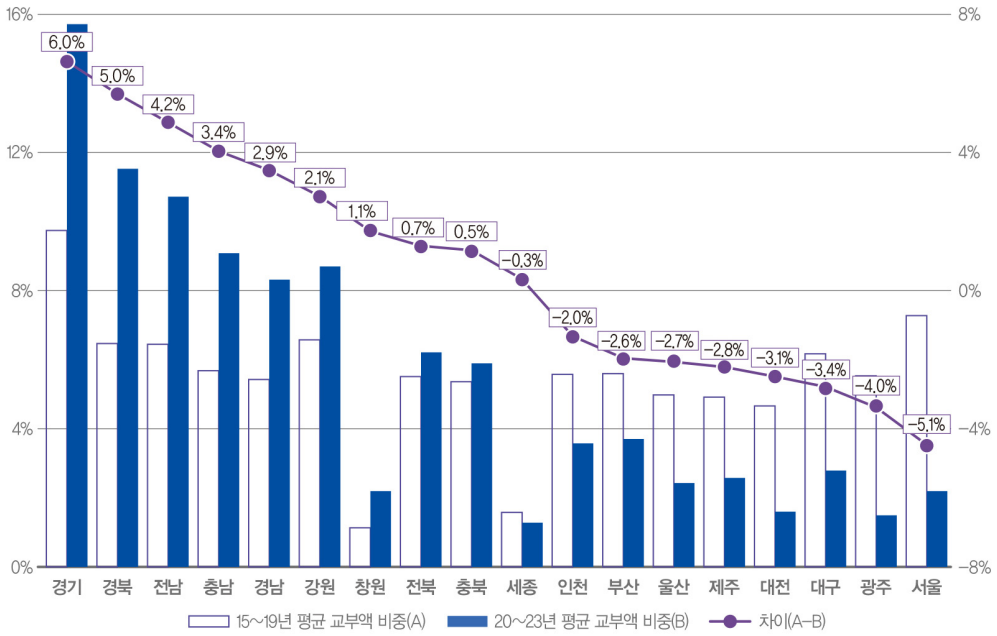


## 2045년 장기추계 모의실험

- 전국의 소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49,562명으로 집계되며[8], 이 중 서울시 소방직 공무원 정원은 6,981명(국가직 2명, 지방직 6,979명)임

-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소방직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9,145명이 늘었고, 연평균 1,740명이 충원되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원이 1,700명 증가하여, 연평균 155명이 충원됨

8) 자료: 소방통계연보

- 2023년 이후 소방직 공무원 충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2년 이후 소방직 공무원 충원이 과거의 정원 증가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해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2023년 이후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시도별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몇 년 이후 현재의 교부액 비중(7.3%)을 회복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음

- 아래 그림에서는 전체 소방교부세 교부액 대비 서울시 교부액 비중을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이 적용되는 2020년부터 2045년까지의 비율 추계치를 나타냄
  - 아래 그림은 2013~2019년 기준 서울시의 5년 평균 소방교부액 배분비율은 7.3%이며, 현재의 충원누적 실적을 배분의 산식으로 적용하였을 때 서울시의 평균 비중을 회복하는 것은 몇 회계연도 이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임

- 모의실험 결과 서울시의 비중은 2020년 1%에서 시작하여, 2024년 4.05%를 회복하고 2030년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됨
  - 2033년 6.08%를 차지하고, 이후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044년이 되어서야 7.03%를 회복하게 되며, 서울시 비중의 장기평균으로 수치로 생각될 수 있는 7.3%를 회복하는 것은 2045년 이후임



• 전체 소방교부세 인상분 대비 서울시 소방교부세 비중 추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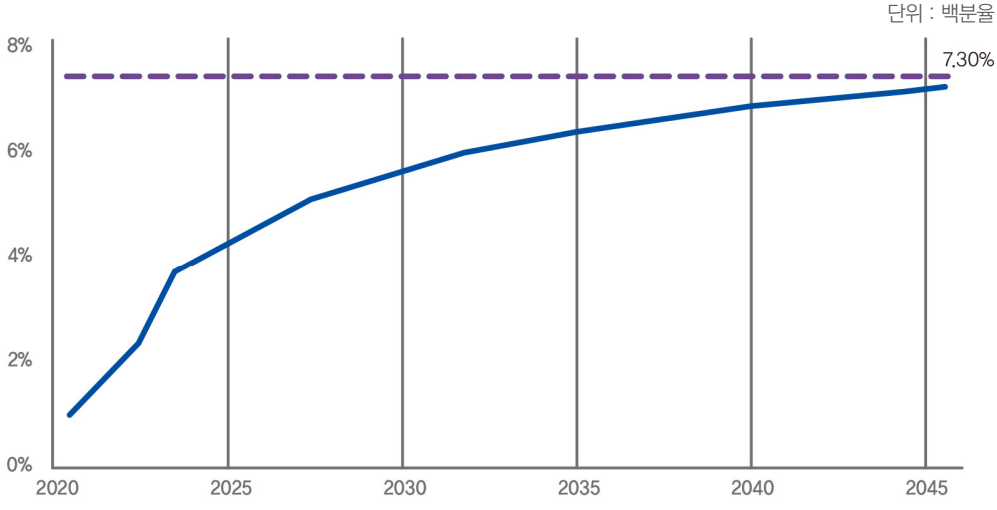

## 5. 분석결과의 시사점

- 이번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은 2017년 이후 시도별 누적 충원인력의 비율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인상분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17년 이후 신규채용 인력만을 대상으로 누적 충원인력을 계산하는 것은 우선 기준시점이 자의적이란 오해를 불러오기 쉬우며, 특히 기준시점을 2017년 이후로 정한 것은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계획과 맞물려 있음

- 즉,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른 전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보다는, 22년까지 추진 중인 현장부족 인력 충원에 대응으로 추가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이 강함

- 따라서 전체 국가직화 이후 소방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우지 않으려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나,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음

- 또한 2017년으로 정해진 누적 충원인력에 따른 시도별 유불리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4년 누적 인건비 부족액이 -385명에 달해 유일하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분에 대한 전체 교부액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전국 대비 1%에 불과해, 최근 5년 평균 교부액 비중인 7.3%에 비해 크게 하회하며, 서울의 조직과 인력을 고려할 때 장기 평균수준으로 볼 수 있는 7.3%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45년 이후로 예측되어,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음[9)]



9)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인상분 배분액에 대한 비중이 서울시 전체 교부세 비중과 같아지는 시점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신규 인력 충원이 2023~2045년 까지 매년 같은 인원을 충원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추계임

- 또한 그림 [소방안전교부액 시도별 평균 비중 격차]에서와 같이 시도별 최근 5년 평균 교부액과 2023년까지 4년 평균 교부세 인상분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격차가 -5.1%로 가장 크긴 하나 대부분의 특광역 지자체는 원래의 교부액 비중보다는 낮은 비율로 인건비 인상분이 배분됨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충원 누적인원을 구하기 위한 기준 시점을 2017년 하반기로 특정한 것은 자의적이며,
  - 이로 인한 소방공무원 추가 충원에 대한 인건비 과부족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며,
  - 주로 면적이 크고 그동안 현장직 인력난이 지적되어온 도 자치단체에게 오랜 기간 유리하며, 반대로 특광역시에는 부정적 여파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있음
  - 국가직 전환과정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후속조치로 도입되어야,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노후화된 소방시설 교체 등의 투자수요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추가재원 확보 시 고려되어야 함

# V

# 소방직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운영 개선방향

- 2019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다음과 같이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이 명시되어 있음

> **지방교부세법 제9조4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



- 소방공무원은 이제 국가직이므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음
  - 소방직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직 인건비에 대한 새로운 재원 부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었으나, 이전에 소방이 지방직으로 있었을 때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국가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지불할 의무가 있게 됨

- 이에 따라 기존의 소방예산에서 국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부담은 제외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의 원칙이 될 수 있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경비는 시·도지사와 협의사항으로 됨

- 따라서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만큼을 매년 국가에 지불하면 됨
  - 이는 이전의 세입구조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보고 이에 합당한 재원을 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 소방직 국가직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부족한 소방인력의 확충,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나,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세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 연도별 담배소비세 현황 •

단위 :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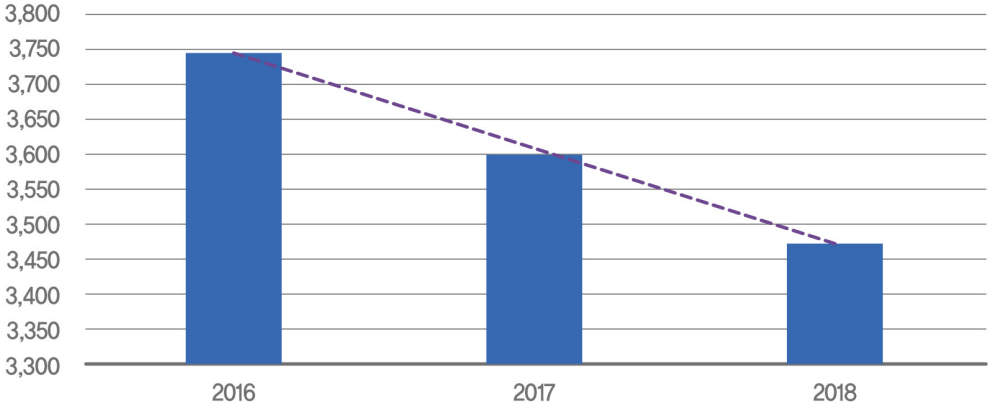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 담배개별소비세율은 2016년 인상되어 인상 첫해인 2016년 과세총액이 3,746십억 원이었으나 2017년과 2018년 각각 전년대비 -3.8%, -3.5% 감소하여 2018년 과세총액은 3,478십억 원으로 줄어듦

- 향후 흡연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감안할 때,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 과세분이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최근 3년간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인 것은 흡연인구 감소에 기인한다기보다, 궐련 담배에 대한 대체재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것도 있음
  - 궐련 담배의 판매비중은 2017년 97.8%에 달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88%로 판매비중이 하락함
  - 반면 2017년 판매비중이 2.2%에 불과했던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9년 11.6%로 점유율을 높였으며, 2019년부터 도입된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4%의 점유율을 나타냄
  -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앞으로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 경우 궐련 담배의 시장점유율은 잠식당할 수밖에 없음

- 아래 표는 부가세를 제외한 담배의 유형별 제세부담금을 나타내며, 궐련 담배는 20개비 기준으로 54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529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각각 궐련 대비 3.6%, 32.6% 낮은 부담금을 적용받고 있음

- 즉, JOOL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1,799원에 불과해 2,914원이 부과되는 일반담배 세금의 약 62% 수준으로서 조세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액상형 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에 비해 낮지 않아 개별소비세 인상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임

• 담배 유형별 제세부담금(부가세 제외) •

| 구분 | 궐련(20개비) |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 액상형 전자담배(1㎖) |
|---|---|---|---|
| 담배소비세 | 1,007 | 897 | 628 |
| 지방교육세 | 443 | 395 | 276 |
| 건강증진기금 | 841 | 750 | 525 |
| 개별소비세 | 549 | 529 | 370 |
| 폐기물부담금 | 24.4 | 24.4 | - |
| 엽연초부담금 | 5 | - | - |
| 합계 | 2,914.4 | 2,595.4 | 1,799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9. 9)

- 이를 위해 2019년 하반기에 논의되었던 액상형 전자담배 인상을 통해 소방과 안전 지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내용의 부대의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충당 재원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 소방직의 국가직화 관련 주요 법률내용

•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 주요내용 •

| 법률 | 주요 내용 |
|---|---|
| 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3조)<br>• 대통령·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근거 마련(6조)<br>(대통령령) 시도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br>• 신규채용, 승진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근거 마련(11조)<br>•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24조)<br>•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26조)<br>• 고충심사 중 재심 및 소방령 이상 고충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27조)<br>※ 시행일 : 2020. 4. 1 |
|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공무원의 종류 중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2조)<br>※ 시행일 : 2020. 4. 1 |
|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 삭제(2조)<br>⇒「소방기본법」에서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두는 근거 신설<br>※ 시행일 : 2020. 4. 1 |
| ④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2조의2)<br>•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음(3조3항)<br>•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둠(3조4항)<br>•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3조의2)<br>⇒ (대통령령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br>•「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음(3조의3)<br>※ 시행일 : 2020. 4. 1 |
| 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로 조정함(4조1항1호 및 3호, 5조3항3호)<br>•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9조의4) |

| 법률 | 주요 내용 |
|---|---|
| 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지방교부세법 부대의견 〉<br>•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것<br>※ 시행일 : 2020. 4. 1 |
| ⑥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제정) | • 명칭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br>•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담당(3조)<br>• 인건비계정, 소방정책 사업비계정으로 구분(4조)<br>• 인건비계정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조)<br>• 소방정책 사업비계정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등(6조)<br>• 소방사무 관련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그 규모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7조)<br>※ 시행일 : 2021. 1. 1 |
| ⑦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10조)<br>※ 시행일 : 2019. 12. 10 |

자료 : 소방청 보도자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2020. 3. 17)

참고자료 2

# 각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교부액('21~'23)

• 2021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교부액 •

단위: 명, %, 백만 원

| 구분 | 충원누적 실적 (~20년) | 배분비율(A) (시도별충원인력/ 전체충원인력) | 시도별[10] 교부액 (담배소비세 인상액×A) | 채용가능 인원 (교부액기준, 명) | 2021년 충원계획 | (B-C) |
|---|---|---|---|---|---|---|
| 계 | 12,326 | 100.0% | 461,333 | 5,484 | 3,642 | 1,842 |
| 서울 | 201 | 1.6% | 7,523 | 89 | 164 | -75 |
| 부산 | 477 | 3.9% | 17,853 | 212 | 87 | 125 |
| 대구 | 364 | 3.0% | 13,624 | 162 | 73 | 89 |
| 인천 | 454 | 3.7% | 16,992 | 202 | 114 | 88 |
| 광주 | 194 | 1.6% | 7,261 | 86 | 41 | 45 |
| 대전 | 209 | 1.7% | 7,822 | 93 | 19 | 74 |
| 울산 | 288 | 2.3% | 10,779 | 128 | 108 | 20 |
| 세종 | 170 | 1.4% | 6,363 | 75 | 35 | 40 |
| 경기 | 1952 | 15.8% | 73,059 | 869 | 514 | 355 |
| 강원 | 1067 | 8.7% | 39,935 | 475 | 337 | 138 |
| 충북 | 725 | 5.9% | 27,135 | 323 | 210 | 113 |
| 충남 | 1108 | 9.0% | 41,470 | 493 | 377 | 116 |
| 전북 | 756 | 6.1% | 28,295 | 336 | 203 | 133 |
| 전남 | 1309 | 10.6% | 48,993 | 583 | 441 | 142 |
| 경북 | 1435 | 11.6% | 53,709 | 639 | 424 | 215 |

10) 연도별 교부액 예측에서 전체 교부액이 담배 개별소비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충원누적실적에 따른 변화만을 보기 위하여 2020년 교부총액 (4~12월 담배 개별소비세분의 25%)을 연간으로 환산한 461,333백만 원을 '21~23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구분 | 충원누적 실적 (~20년) | 배분비율(A) (시도별충원인력/ 전체충원인력) | 시도별 교부액 (담배소비세 인상액×A) | 채용가능 인원 (교부액기준, 명) | 2021년 충원계획 | (B-C) |
|---|---|---|---|---|---|---|
| 경남 | 1012 | 8.2% | 37,877 | 451 | 330 | 121 |
| 제주 | 332 | 2.7% | 12,426 | 147 | 84 | 63 |
| 창원 | 273 | 2.2% | 10,218 | 121 | 81 | 40 |

• 2022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교부액 •

단위: 명, %, 백만 원

| 구분 | 충원누적 실적 (~21년) | 배분비율(A) (시도별충원인력/ 전체충원인력) | 시도별 교부액 (담배소비세 인상액×A) | 채용가능 인원 (교부액기준, 명) | 2022년 충원계획 | (B-C) |
|---|---|---|---|---|---|---|
| 계 | 15,968 | 100.0% | 461,333 | 5,485 | 3,903 | 1,582 |
| 서울 | 365 | 2.3% | 10,545 | 125 | 356 | -231 |
| 부산 | 564 | 3.5% | 16,295 | 194 | 88 | 106 |
| 대구 | 437 | 2.7% | 12,625 | 150 | 55 | 95 |
| 인천 | 568 | 3.6% | 16,410 | 195 | 94 | 101 |
| 광주 | 235 | 1.5% | 6,789 | 80 | 24 | 56 |
| 대전 | 228 | 1.4% | 6,587 | 78 | 22 | 56 |
| 울산 | 396 | 2.5% | 11,441 | 136 | 116 | 20 |
| 세종 | 205 | 1.3% | 5,923 | 70 | 32 | 38 |
| 경기 | 2466 | 15.4% | 71,245 | 848 | 526 | 322 |
| 강원 | 1404 | 8.8% | 40,563 | 483 | 335 | 148 |
| 충북 | 935 | 5.9% | 27,013 | 321 | 268 | 53 |
| 충남 | 1485 | 9.3% | 42,903 | 510 | 413 | 97 |
| 전북 | 959 | 6.0% | 27,707 | 329 | 298 | 31 |
| 전남 | 1750 | 11.0% | 50,559 | 602 | 442 | 160 |
| 경북 | 1859 | 11.6% | 53,709 | 639 | 394 | 245 |
| 경남 | 1342 | 8.4% | 38,772 | 461 | 324 | 137 |
| 제주 | 416 | 2.6% | 12,019 | 143 | 76 | 67 |
| 창원 | 354 | 2.2% | 10,227 | 121 | 40 | 81 |

• 2023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예상교부액 •

단위: 명, %, 백만 원

| 구분 | 충원누적 실적 (~22년) | 배분비율(A) (시도별충원인력/ 전체충원인력) | 시도별 교부액 (담배소비세인상액×A) | 채용가능 인원 (교부액기준, 명) |
|---|---|---|---|---|
| 계 | 19,871 | 100.0% | 461,333 | 5,485 |
| 서울 | 721 | 3.6% | 16,739 | 199 |
| 부산 | 652 | 3.3% | 15,137 | 180 |
| 대구 | 492 | 2.5% | 11,422 | 136 |
| 인천 | 662 | 3.3% | 15,369 | 183 |
| 광주 | 259 | 1.3% | 6,013 | 71 |
| 대전 | 250 | 1.3% | 5,804 | 69 |
| 울산 | 512 | 2.6% | 11,887 | 141 |
| 세종 | 237 | 1.2% | 5,502 | 65 |
| 경기 | 2992 | 15.1% | 69,463 | 827 |
| 강원 | 1739 | 8.8% | 40,373 | 480 |
| 충북 | 1203 | 6.1% | 27,929 | 332 |
| 충남 | 1898 | 9.6% | 44,065 | 524 |
| 전북 | 1257 | 6.3% | 29,183 | 347 |
| 전남 | 2192 | 11.0% | 50,890 | 605 |
| 경북 | 2253 | 11.3% | 52,307 | 622 |
| 경남 | 1666 | 8.4% | 38,679 | 460 |
| 제주 | 492 | 2.5% | 11,422 | 136 |
| 창원 | 394 | 2.0% | 9,147 | 108 |

## 참고문헌

김재호·임재만(2019).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강인재 외(2017).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임성빈(2019). 지방세 소방재원조달 개선방안.

소방통계연보(2019).

소방청 보도자료(2017. 11. 13).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

_____(2018. 1. 3). "소방장비 노후한 곳에 소방안전교부세 더 많이 지원".

_____(2019.11. 19).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_____(2020. 3. 1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19. 9. 23).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